

## 칸트에 있어서 이성의 실천원리와 자유의지의 관계

허정훈\*

### 目次

- I. 서론
- II. 실질적 실천원리와 정감적 관심
- III. 도덕적 실천원리와 정언명법
- IV. 선의지와 도덕적 의무
- V. 타율과 자율
- VI. 결론

### I. 서론

칸트의 윤리에서 자유와 이성은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 자유에 대한 설명은 이성에 대한 이해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되며, 이성에 대한 이해는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귀결된다. 왜냐하면 인간의 행위는 의지가 감각적 충동으로부터 벗어나 실천의 영역에서 이성에 의해 요구되는 행위의 필연성 즉 당위로서 명령되는 법칙들에 의존할 때 자유이기 때문이다. 즉 인간의 의지는 감각적 충동의 강제로부터 독립해 있으며, 동시에 이성의 원리에 의존해서 사건 계열을 스스로 개시할 때 자유로운 의지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자유의 의미를 이성의 원리에 대한 의지의 의존에서 찾을 때, 의지가 맹목적이고 무의식적인 어떤 힘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줄 수는 있다해도, 동시에 그런 의지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말하자면 자유와 이성의 불가분적인 관련성으로 말미암아 의지와 이성 사이에 의지의 자유와 이성의 강제라는 어떤 갈등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자유를 감각적 충동으로부터의 독립성이라는 소극적 의미에서 고려할 때, 이성이 의지에 대해 세우는 당위에 의지가 복종해야 할 필연성은 이해하기 어렵게 되는 것이다. 이런 문제는 일견해서 자유와 필연에 대한 제3 이율배반이 모습을 달리해서 재등장하는 것처럼 여겨진다. 그 문제는

\* 윤리교육과 교수

자유와 자연적 인과필연성의 문제가 아니라, 자유와 이성의 필연성의 문제이다. 자유는 인과법칙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당위와 도덕적 원리에 대해서도 자유로워야 한다고 보는 하르트만은 이 문제를 당위 이율배반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칸트의 의지 자유의 문제는 의지가 실천적으로 감성적 충동에 의한 강제로부터 독립해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의지가 이성적 원리에 의존하는 것 또한 자발성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지 않으면 안되는 문제이다. 즉 이성적 존재의 의지가 자유라면, 이성적 존재의 행위가 동물적 감성에 의존하지 않고 현상의 사건 계열을 스스로 개시할 수 있는 자발성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성의 원리에 대한 의존도 자유라는 것을 보여야 하는 문제이다. 왜냐하면 당위는 어떤 종류의 필연성이든 그런 필연성으로부터 의지의 자유 가능성을 전제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성의 명령과 금지는 그것에 복종하거나 복종하지 않기를 선택할 수 있는 존재에게나 의미있는 일이지, 오직 어떤 방식으로만 행위할 수 있는 존재에게는, 그래서 달리 선택할 수 없는 존재에게는 당위란 무의미한 것이기 때문이다.

칸트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자 무차별적 또는 무원인적인 자유 개념에 의존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의 자유의지는 오직 무능력한 의지만을 언급하게 된다. 의지가 움직인다면, 그 때에는 이미 어떤 규정의 원리가 포함되어 있으며 언제나 어떤 법칙 하에 있는 것이라고 칸트는 생각한다. 따라서 칸트는 무차별적 자유 개념을 배제하고 자유의지와 이성의 필연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자유 개념을 필요로 했다. 그는 그것을 자율적 자유라는 개념으로 『원론』에서 전개하고 있다.

칸트가 자율적 자유 개념의 정립을 통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이성의 법칙이 자유에 관한 단순한 제한이 아니라 그 자체 자유의 산물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의미의 자유 개념을 드러내는 것은 의지가 법칙에 대한 복종 행위를 통해 그 자유를 상실함이 없이도 복종할 수 있는 그런 이성의 법칙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그런 법칙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이성의 법칙은 바로 도덕법칙이다. 그런데 우리는 도덕법칙에 따라서 행동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는 우리의 주관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도 실용적인 이성의 원리와 법칙에 따라 행동할 수 있다. 칸트가 자율적 자유의 의미를 드러내는 방식은 이 두 가지 법칙의 구별에 기초한다.

## Ⅱ. 실질적 실천원리와 정감적 관심

칸트가 감각적이고 동물적인 충동만을 가진 존재로부터 인간을 포함한 이성적 존재 일반을 구별했던 토대는 다양하고 변화하는 상황에 적응하는 행위에 실천이성이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우리는 우선적으로 칸트가 생각했던 행위의 그런 측면을 목적과 수단의 개념으로부터 이해할 수 있다.<sup>1)</sup> 즉 목적-수단이라는 이성의 일차적인 역할에 의거할 때, 어떤 존재자의 행위가 이성적이고 그래서 그 존재가 이성적 존재임을 확인하는 일차적인 토대는 그 행위를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의욕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그래서 우산을 사용함으로써 비에 젖는 것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한다면, 그것은 비에 젖지 않으려는 목적에 필요한 수단을 사용한 이성적 행위로 여겨질 수 있다. 물론 동물도 비에 젖지 않기 위해 피할 수 있다. 그러나 동물의 경우 자신이 하는 행위의 성질이나 그 행위가 자신의 목적에 대한 수단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가정할 근거는 없다. 반면 인간의 행위에 있어서는 비를 피하는 것이 비교적 무의식적인 행동이라 해도, 그것은 비에 젖을 위험을 피하는 신중하고 체계적인 방법과 같은 삶의 방책의 일부일 수 있다.

이성적 존재자의 행위의 이런 특징은 현재 욕구하는 목적과 미래에 욕구할 목적이 다를 경우 현저하게 나타난다. 사물이 약속하는 것, 즉 그것이 미래 경험에서 의미하는 것이 현재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것과 다를 경우, 그 미래 의미에 비추어 착수된 행위는 그 순간의 현저한 욕구에 고통스러울 정도로 반대될 수도 있다. 이 경우 우리가 스스로 장래의 고통을 회피하려는 의도에서 현재의 고통을 감수하고 있으며, 우리는 우리 행동을 결정함에 있어 상황의 의미를 그 상황의 지금과 여기라는 성격에 우선시키고 있다. 우리가 보기에 우리 자신과 세계에 대한 지식이라고 여겨지는 것에 비추어서 행위하는 존재로서, 즉 사고가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존재로서 우리는 비록 충동이 거기에 붙어 있을 경우에도 충동에 따라서가 아니라, 방책 즉 실천원리에 따라서 행동할 수 있다. 여기서 칸트는 그 미래의 의미 즉 실천원리를 매개로 해서 충동을 우리의 관심으로 통합하고 또 우리의 관심에 의해 통제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칸트는 우리가 이런 미래의 의미 또는 목적

1) Paton도 칸트가 미래를 대비하고 욕구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사용하는 것으로서의 이성의 역할에 일차적으로 흥미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고 있다. H.J. Paton, *The Categorical Imperative*(New York:Harper & Row, 1967), p.84.

의식을 가지고 행동할 때 우리는 정감적 관심(pathologisches Interesse)이라 부르는 것을 지닌다고 한다.

물론 관심이 충동으로부터 생길 수도 있다. 그렇지만 그것은 상황의 의미와 대안적 행위의 귀결에 대한 추정적 지식에 의해 유지되는 통제적 성격도 가지는 것이다. 이 때문에 관심은 개념 쪽에 가까운 그리고 개념에로 향하는 충동이다.<sup>2)</sup> 지적 행위는 맹목적이거나 순전한 충동에 의해서가 아니라 적절한 개념에 의해 인도된 관심이 그 동기가 되는 행위이다. 충동은 순간순간에 따라 생겼다 사라지는 경련이나 폭발적 행위로 이어지나 관심은 방책이나 계획에 따른 행위로 이어진다. 따라서 칸트는 오직 추론할 힘을 가진 존재만이 관심에서 행위할 수 있다고 말한다. “관심이란 그것을 통해 이성이 실천적이 되는, 즉 의지를 결정하는 원인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오직 이성적 존재만이 무엇인가 관심을 가진다고 말해진다. 이성이 없는 피조물은 감성적인 충동만 느낄 따름이다.”<sup>3)</sup>

이성적 존재로서 인간은 관심에 따른 행동방식을 표현할 수 있고, 그것에 따라 살려고 노력할 수 있다. 그 행동방식은 <나는 내 책의 표지에 내 이름을 쓰는 것을 관례로 하겠다>와 같은 특정한 습관으로 표현할 수 있는 매우 특정한 규칙들 뿐만 아니라, <현재를 즐겨라>와 같은 넓은 범위의 다양한 행동들에 적용될 수 있는 일반적인 준칙으로도 표현될 수 있다. 그것들은 거의 효과적이지 않은 새해의 좋은 결심일 수도 있다. 그것들은 그 사람의 전기학자나 정신과의사에 의해서만 드러날 수 있는 고정된 삶의 방책일 수도 있다. 도덕과 관련해서 그것들은 이상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의식적으로 선택되고 고안된 것, 현실의 삶이 그보다 못하고 좌절을 가져올 때에도 남아있는 어떤 고무적인 생각일 수 있다. 칸트는 이런 종류의 방책들을 <법칙에 대한 표상>이란 이름으로 묶어 놓고 있다.

왜 우리는 이런 관심에 따라 삶의 방책을 세우고 그것에 따라 행위하는가? 인간

2) L. W. Beck, A Commentary on Kant's Critique of Practical Reason(The Univ. of Chicago Press, 1960), p.35

3) I. Kant, Grundlegung zur Metaphysik der Sitten, Hrsg. von Wilhelm Weischedel (Suhrkamp, 1956), Bd. VII, S.97. Anmerkung. 칸트에 의하면, 심성의 모든 능력에는 관심이 있는 데, 관심은 일종의 원리이고, 원리는 관심의 실행을 촉진시키는 조건을 말한다고 한다. 그리고 이성은 원리의 능력으로서 심성의 모든 능력의 관심을 규정하고 이성 자신의 관심도 스스로 규정한다. 그래서 사변적 사용에 있어서 이성의 관심은 대상을 인식하여 선천적인 최고 원리들에 도달하는 것이며, 실천적 사용에 있어서는 최후의 완전한 목적에 의지를 규정하는 것이라고 한다. 참조:I. Kant, Kritik der praktischen Vernunft(Felix Meiner, 1974), S.138

의 의지는 오직 이성의 보편적 실천법칙에 따라서만 행위하는 능력이 아니고, 오히려 자연법칙에 종속되어 있는 감각적 욕구와 경향성에 종속될 수 있는 것이다.

“경험의 대상인 현실적 자연에 있어서 자유의지는 그 자체 보편적 법칙에 따라서 자연에 근거를 줄 수 있거나, 또는 그 법칙에 따라서 배열되어 있는 자연에 저절로 적합하게 되는 그런 준칙으로 스스로를 규정하도록 되어있지 않다. 오히려 그것은 순수 실천법칙에 따라 우리의 의지에 의해서만 가능한 자연이 아니라, 정감적(물리적) 법칙에 따르는 자연으로 이루어진 개인적 경향성들로 되어 있다.”<sup>4)</sup>

이와 같이 인간의 의지는 보편적인 이성의 법칙 뿐만 아니라, 감각적 욕구에 부응하는 경향성의 요구에 의해서도 규정될 수 있는 의지이다. 칸트는 이런 의지에서만 무엇인가에 대한 관심이 생긴다고 한다.

“우연적으로 규정되는 의지가 이성의 원리에 의존하는 것을 관심이라 부르며, 관심은 그 자체 항상 이성과 일치하지 않는 의존적 의지에서만 생긴다. 그러므로 신의 의지에서 어떤 관심도 생각할 수 없다. 그러나 인간의 의지는 관심으로부터 행위함이 없이도 그 무엇인가 관심을 가질 수 있다. 전자의 관심은 행위의 대상에 대한 정감적 관심을 의미하며, 후자의 관심은 행위에 대한 실천적 관심을 의미한다. 그것은 의지가 이성의 원리 자체에 의존하고 있음을 나타내며, 전자는 의지가 경향성에 이바지하기 위해 이성의 원리에 의존함을 표시한다. 즉 전자에서 이성은 경향성의 욕구에 응할수 있는 실천적인 규칙만을 제공한다. 후자에서 나의 관심은 행위이나, 전자에서는 행위의 대상(나에게 유쾌한 것)이다. 의무에서 하는 행위에서 관심은 대상에 대한 것이 아니라, 행위 그 자체와 그것의 이성적 원리(법칙)이다.”<sup>5)</sup>

이성적 존재로서 인간은 행위와 법칙에 대한 직접적이고 순수한 실천적 관심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칸트의 강한 신념 중의 하나이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신적인 의지와는 다른 유한한 인간 의지의 특성이다. 그것은 보편법칙에 따라 항상 자연에 근거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그런 보편법칙에 저절로 적합하게 되어 있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경험적 법칙에 따르는 경향성에 종속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그런 경향성들에 의해서만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성의 원리에도 의존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기에 인간에 있어서

4) K.d.p.V., S.52~53.

5) Grundlegung, S.42. Anmerkung

의지는 우연적으로 이성에 의해 규정되며, 동시에 경향성에 이바지하기 위해 이성  
에 의존한다. 그런 경향성의 만족에 대한 관심이 유한한 이성적 존재로서의 인간  
에 있어서 욕구되는 대상과 행위의 매개체가 되는 것이다. 즉 행위는 그것이 산출  
하려는 결과로서의 대상이든 또는 경향성의 만족으로서의 대상이든 욕구되는 대상  
에 대한 우리의 관심에 의존한다. 이 때의 관심은 행위의 대상 또는 의도된 결과  
에 대해 직접적이기 때문에 정감적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정감적 관심은 유한한 이성적 존재에게서 완전히 제거할 수 없는 동물적 경향성  
의 만족에 대한 것이지만, 그럼에도 그것은 이성을 통해서 생각되는 한에서의 경  
향성이다. 바꿔 말해서 인간에 있어서 동물적 경향성은 이성의 활동을 통해 행위  
의 준칙 또는 이성적 원리를 제시하는 관심으로 변형되지 않는 한, 그것에 따른  
행위는 인간의 행위가 될 수는 없다. 동물적 충동이나 경향성은 칸트에게 있어서  
이성에 의해 준칙으로 채택되지 않는 한, 결코 행위의 동기가 될 수 없다. 이런 동  
물적 충동이나 경향성을 단순한 동물적 행위 즉 자연법칙에 종속된 행위가 아니라  
이성적 존재의 자유로운 행위로 변형시키는 것은 그것을 행위의 동기로 만들어 주  
는 관심과 그런 관심에 기초한 준칙이다. 칸트는 이런 준칙을 실질적인 실천원리  
라 부른다.

실질적인 실천원리는 대상을 획득하는 데 필요한 종류의 행위를 형성하는 것이  
다. 그것은 행위가 수단이 되고 대상이 목적이 되는 목적과 수단을 진술하는 것이  
다. 즉 실질적인 실천원리는 일차적으로 어떤 종류의 상황에서 어떤 목적을 위해  
어떤 방식으로 행위하려는 의지의 원리이다. 우리는 이러한 목적과 수단의 개념에  
의해 칸트가 말하는 숙달의 원리와 사려의 원리 또는 자기에의 원리를 실질적인  
실천원리로 이해할 수 있다.

우리가 다양한 목적들에 대해 최선의 수단으로 여겨지는 많은 특정한 실질적인  
실천원리들에 따라 행위할 때, 그 행위들은 일반적으로 <나는 내가 가질 수 있는  
어떤 목적에 대해서도 가장 효과적인 수단을 사용할 것이다>라는 숙달의 원리에  
의존한다. 이런 숙달의 원리에 따라 어떤 특정한 목적을 추구하는 이성적 행위자  
는 그의 이성이 욕구능력을 지배하는 한, 필연적으로 자신의 능력 내에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을 사용한다. 물론 서로 다른 능력의 소유자들은 동일한 목적에 대  
해서도 서로 다른 수단을 사용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행위자의 능력의 차이를  
무시한다면, 같은 상황에서 모든 이성적 행위자는 필연적으로 동일한 실천원리에  
따라 행위할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 점에서 실천이성의 역할은 분명하게 직시  
되는 목적에 대한 적절한 수단을 형성하는 것이다.

그러나 칸트는 여기서 더 나가서 이성적이며 유한한 존재 누구나가 필연적으로 욕구하는 목적으로서 행복을 상정한다. “모든 이성적 존재자에게...현실적인 것으로 전제될 수 있는 하나의 목적, 그리고 그들이 가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자연적 필연성에 의해 그들 전부가 가지고 있다고 확실하게 전제할 수 있는 하나의 의도가 있다. 그것은 행복하려는 의도이다.”<sup>6)</sup> 인간은 필연적으로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게 마련이다. 감성계에 속하는 인간은 필요를 가진 존재이며, 따라서 이성은 “거부할 수 없는 하나의 과제”<sup>7)</sup>를 가지는 데, 그 과제는 감성의 요구에 기여하고 현세와 그리고 가능한 내세에서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다. 칸트는 행복을 때로 쾌락주의적 관점에서 전체 생활을 통한 지속적이고 끊임없는 쾌락의 가능한 최대치<sup>8)</sup> 또는 모든 경향성의 만족<sup>9)</sup>으로 간주한다. 만일 행복을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과 경향성의 총체적 만족으로 간주된다면 쾌락주의적 관점에서 행복에의 수단으로 여겨졌던 것들은 행복의 요소로 나타난다. 그런 요소들 중에는 우리가 욕구하는 대상이나 추구하는 목적들로서 지식과 통찰력, 부, 명예, 장수와 건강 같은 것들이 포함될 것이다. 여기서 실천이성은 일시적이거나 지속적인 쾌락에 대한 수단에 일차적으로 관계하지 않으며,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가 일종의 궁극목적으로서 추구하는 행복을 구성하는 것들에 관계한다. 그것은 유기적 생활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많은 것들을 가능한 한 만족시키거나, 우리의 본성적 경향성들이 행복이라는 전체 안에서 서로 조화를 이루게 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이럴 때, 실천이성은 사려 또는 이성적 자기애의 원리를 드러낸다.

이성적 자기애 또는 사려의 원리는 지속적인 쾌락을 주는 느낌을 얻기 위한 수단을 사용하는 원리라기 보다는, 오히려 쾌락을 주는 느낌이 그 중의 하나일 뿐인 다양한 목적들을 하나의 포괄적인 전체로 통합하는 원리이다. 따라서 <나는 나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려 한다>는 자기애의 원리는 <나는 최대한의 쾌락을 주는 수단을 사용하겠다>는 숙달의 원리 보다는 <나는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전체 삶에서 나의 욕구들의 만족을 목표로 삼겠다>는 통합의 원리로서 해석되는 것이다.<sup>10)</sup> 따라서 우리는 사려의 원리에 의해 숙달의 원리가 말하는 수단을, 비록 그 목적을 원하면서도, 거부할 수 있으며, 그래서 그 계획 자체를 포기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6) Grundlegung, S.44~45.

7) K.d.p.V., S.72.

8) K.d.p.V., S.24~25; H.J. Paton, p.85 참조

9) Grundlegung, S.25(A:255); H.J. Paton, p.85 참조

10) H.J. Paton, Op. Cit., p.86~87.

이성적 행위자가 어떤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려 할 때, 그가 이성적인 한, 그 수단이 아무리 효과적이라해도 필연적으로 전체적인 자신의 행복을 파괴한다면, 그 수단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사려의 원리가 숙달의 원리보다 상위적이라는 것이며, 숙달의 원리는 사려의 원리에 의해 조건지워진다는 것을 뜻한다.<sup>11)</sup> 따라서 칸트는 “모든 실질적인 실천원리는 자체상으로는 전혀 동일한 종류이며, 자기애 즉 자기 행복의 보편적인 원리에 속한다”<sup>12)</sup>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칸트는 더 나아가서 자기애의 원리에 따른 준칙도 조건적이라고 주장한다. 우선적으로 그것은 특정한 행위자의 본성과 욕구에 의해 조건지워진다. 우리는 간다가 히틀러와 같은 삶에서 행복을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없다. 말하자면 사려 또는 자기애의 원리는 도덕의 원리에 의해서 조건지워진다. 칸트의 관점에서 이성적 행위자는, 이성이 욕구능력을 완전히 지배하는 한, 도덕적 악이 아무리 자신의 행복에 기여한다해도 그런 악을 선택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숙달의 원리나 사려의 원리 보다는 도덕의 원리가 우선하며, 인간에게는 단순한 욕구나 경향성으로부터 나오는 정감적 관심 이외에 다른 특수한 종류의 관심 즉 도덕적 관심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Ⅲ. 도덕적 실천원리와 정언명법

이미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칸트는 자연 안의 모든 것은 법칙에 따라 움직이며, 이성적 존재만이 법칙에 대한 표상에 따라 즉 원리에 따라 행동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그런 능력으로서의 의지는 감성적 충동에 의해 결정됨이 없이 행위 과정을 선택할 수 있으며, 동시에 이성의 원리를 자신의 실천적 규정의 근거로 삼는 능력이다. 따라서 의지의 자유는 오직 법칙에 대한 표상이나 관념을 통한 의지의 규정으로서만 가능한 것이다.

그런데 이미 서문에서 언급한 것처럼, 감성적이면서도 이성적인 존재에게 이성의 실천원리나 법칙 또는 법칙에 대한 표상은 항상 강제적인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성의 실천원리가 의지를 강제하는 한에서, 칸트는 그것을 이성의 명령으로 그리

11) Grundlegung, S.45 “자신의 최대의 행복을 위한 수단의 선택에서의 숙달은 좁은 의미에서 사려라고 부를 수 있다.”

12) K.d.p.V., S.24.



고 그 명령의 정식을 명법이라 부른다.<sup>13)</sup> 명령과 명법이라는 칸트의 용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욕구에 의해 방해받지 않는 실천이성은 단지 <나는 의욕한다>라고 하는 반면, 방해받는 실천이성은 "나는 의욕해야만 한다"라고 말한다는 점이다. 즉 이성의 실천원리는 유한한 인간에게는 강제 또는 의무의 원리로 나타난다는 점이다. 이런 특징은 숙달이나 사려의 원리에도 마찬가지이다. 왜냐하면 인간은 행복의 추구나 목적에 대한 수단의 선택에서 조차 전적으로 이성적이지 않을 때가 있기 때문이다.<sup>14)</sup>

따라서 인간에게 명령으로 나타나는 모든 이성의 실천원리들은 강제로서 경험된다. 그것들은 우리의 경향성이 그것과 다르게 우리를 규정할 때 더욱 분명하게 어떤 것을 해야 하거나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표현한다. 물론 모든 실천법칙들이 다 도덕적 의미에서 당위를 표현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명법 자체는 이성이 행위 주체의 의지에 그것의 실천적 요구를 부가하는 단순한 형식이기 때문이다. 신의 의지처럼 완전히 선한 의지는 항상 필연적으로 법칙과 일치해서 즉 이성의 실천적 요구에 일치해서 행동할 것이다. 그런 의지의 경우 당위는 적절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명법이란 말은 인간의 경우처럼 "주관적 성질로 인해 객관적 법칙에 따라 필연적으로 규정되지 않는 의지와 이성의 객관적 법칙과의 관계(강제)"<sup>15)</sup>를 잘 드러낸다. 즉 인간의 행위 준칙은 주관적 근원에서 도출되고, 따라서 그 자체 항상 이성의 실천법칙에 일치하는 것이 아니므로, 명법들이 그 법칙을 하나의 명령으로서 의지에 부가하는 것이다.

그런데 모든 명법들은 어떤 현실적이거나 가능한 목적을 위해 행위를 규정하는 가언명법의 형식으로 나타나거나, 아무런 목적에 근거하지 않고 단적으로 행위를 규정하는 정언명법으로 나타난다. "가언명법은 우리가 욕구하는 어떤 것(또는 가능하게 욕구할 수 있는 것)의 달성에 대한 수단으로서 가능한 행위의 실천적 필연성을 나타낸다. 정언명법은 어떤 목적에도 관계없이 그 자체로 행위를 객관적으로 필연적인 것으로서 나타낸다."<sup>16)</sup>

가언명법은 구체적 상황에서 그것이 준거하는 목적 만큼이나 많을 수 있다. 그것은 이미 우리가 앞에서 언급했던 숙달의 원리와 사려의 원리를 반영하는 것이

13) Grundlegung, S.41

14) H.J. Paton, Op. Cit., p.114.

15) Grundlegung, S.42

16) Grundlegung, S.43

다. 인간이 개별적인 상황에서 가질 수 있는 목적들과, 그리고 본성상 현실적으로 가지며 필연적으로 가진다고 전제할 수밖에 없는 행복이라는 목적의 동인에서 생기는 실천원리 또는 법칙들은 그런 목적 달성에 실용적인 것이다. 가언명법은 이런 “실용적인 법칙”<sup>17)</sup>을 명령으로 부가하는 것이다. 반면에 정언명법은 행위의 실질이나 목적에 관계하지 않고, 오직 행위가 나오는 원리와 형식에만 관계한다. 그것은 우리에게 해야 할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행위 방식을 말해준다. 이런 이유로 정언명법은 모든 경험적 규정근거들에 앞서서 그리고 그것들과는 독립적으로 의지를 규정할 수 있지만, 가언명법은 의지를 규정함에 있어서 항상 행위의 목적이나 실질에 의존한다. 그러므로 정언명법만이 법칙이 지니는 “무제약적이고 객관적이며 따라서 보편적으로 타당한 필연성의 개념”<sup>18)</sup>을 함축할 수 있다.

가언명법은 그것이 하나의 명법이 되는 제약 즉 목적이 진술되지 않는 한, 그것이 행위에 대한 어떤 특수한 규정을 포함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다시 말해서 욕구된 목적만이 그 실현을 위한 필연적인 수단을 규정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정언명법을 고려할 때, 우리는 어떤 실예에 의해서 즉 경험적으로 그런 명법을 보여줄 수는 없지만, 우리는 직접적으로 그것이 포함하고 있는 바를 안다고 칸트는 주장한다.<sup>19)</sup> 왜냐하면 그 명법은 법칙 이외에는 오직 그 법칙과 일치해서 행동하려는 준칙의 필연성만을 포함하며, 그 법칙은 그것이 제약되는 어떤 목적도 포함하지 않으므로, 그 행위의 준칙이 일치해야 하는 그런 법칙의 보편성을 제외하고는 그 속에 아무 것도 없기 때문이다.

여기서 칸트는 가언명법이 표현하는 모든 종류의 실용적인 법칙을 법칙으로서가 아니라 단순한 실천적 훈계로서 격하시키고, 오직 정언명법만이 실천적인 법칙을 제시한다고 주장한다.

17) I. Kant, Kritik der reinen Vernunft(Felix Meiner, 1956), B834. 칸트는 가언명법을 기술에 속하는 숙달의 명법(technischer Imperativ)과 복지에 관한 실용적 명법(pragmatischer Imperativ)으로 구별하고, 전자가 표현하는 실질적 실천원리를 숙달의 규칙으로, 후자는 사려의 충고라고 부른다. 그러나 여기서는 정언명법이 표현하는 도덕법칙과의 구별에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가언명법이 표현하는 실천원리를 구별하지 않고, 『순수이성비판』의 용어에 따라 모두 실용적인 법칙으로 부르코자 한다. Grundlegung, S.45~46 참조

18) Grundlegung, S.46

19) Grundlegung, S.51.

“준칙들은 원리이기는 하지만 명법이 아니다. 그러나 명법이...가언명법이라면, 그것은 실천적 훈계이기는 하나, 법칙은 아니다....따라서 법칙은 정언적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법칙이 아니다. 왜냐하면 훈계는, 그것이 실천적이어야 한다면, 정감적인, 따라서 의지에 우연히 붙어있는 제약에서 독립해 있는 필연성이 없기 때문이다.”<sup>20)</sup>

“정언명법만이 실천적 법칙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 이외의 모든 것은 의지의 원리이기는 하나, 법칙이라고 부를 수 없다. 왜냐하면 임의의 어떤 의도를 달성하기 위해 필연적인 것은 그 자체에 있어서 우연적인 것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며, 우리가 그 의도를 포기할 때는 언제나 그 훈계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제약적 명령은 의지로 하여금 자유로이 그것에 반대되는 것을 임의로 취하도록 하지 않고, 따라서 우리가 법칙을 위해 요구하는 필연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sup>21)</sup>

숙달의 규칙이나 사려의 충고가 아니라 오직 정언명법만이 엄격하게 법칙이라 불릴 수 있다. 명법이라는 것은 우리의 경향성에 이바지하는 것 보다는 오히려 반대되는 경우에 그 의미가 잘 드러난다. 명법이 드러내고자 하는 법칙은 우리가 우연히 특정한 목적을 추구하게 되었다는 사실이나, 심지어 법칙에 일치해서 행위할 때 행복에 도달하기 더 쉽다는 사실에도 전혀 의존하지 않는다. 법칙은 우리의 경향성과 반대되거나 우리의 행복을 손상시킨다해도 여전히 적용된다. 그러나 가언명법은 조건적이며, 그것이 표현하는 실용적인 법칙 또한 조건적이다. 거기에는 주관적 필연성이 있으나, 객관적 필연성이 있을 수 없으며, 추구하는 바의 목적에 따라 항상 우연적이다. 따라서 가언명법이 비록 선택된 목적에 대해 실현의 수단으로서 의존하는 어떤 특정한 행위의 객관적 원리라 해도, 그것은 실천법칙에 기본적인 조건이 되는 객관적으로 강제하는 필연성을 결여하고 있다. 경향성에 이바지하려는 정감적 관심에서 비롯되는 것은 주관적으로 타당한 실천원리로서 준칙을 주지만, 법칙을 주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런 경향성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만 그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주관적 원리를 줄 수 있으나, 우리의 경향성과 자연적 성향이 그에 반대되더라도 그렇게 행위하도록 명령하는 객관적 원리를 주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오직 정언명법만이 실천법칙을 드러낸다. 실천법칙은 그것의 내용이나

20) K.d.p.V., S.22.

21) Grundlegung, S.50

실질을 완전히 무시하고, 오직 그것의 형식에만 준거하므로써, 즉 모든 이성적 존재자의 의지에 타당한 실천 원리의 형식에만 준거하므로써, 명법에 의해 표현될 수 있다. 따라서 정언명법은 오직 법칙의 형식에 대한 준거와 보편적인 실천법칙이 될 수 있도록 행위의 준칙을 그런 형식에 일치시켜야 한다는 명령만을 포함한다.

그런데 만일 모든 정언명법을 이와 같이 법칙의 형식에 대한 준거와 그런 형식에 우리의 준칙이 일치해야 한다는 명령으로 환원된다면, 그 때는 오직 한가지 정언명법만이 남게 된다. 칸트의 표현에 따르면, 그것은 “네 준칙이 보편적인 법칙이 되도록 동시에 의욕할 수 있는 그런 준칙에 따라서만 행위하라”<sup>22)</sup>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 “네 의지의 준칙이 항상 동시에 보편적인 법칙 수립의 원리로서 타당할 수 있도록 행위하라”<sup>23)</sup>는 순수 실천이성의 근본법칙이다.

칸트는 이런 근본법칙을 우리의 모든 행위의 도덕성에 대한 재판관으로 삼는다. 도덕적으로 선한 것은 경향성이나 욕구로부터 행해진 것이 아니고, 법칙 자체를 위해 행해진 것이라고 칸트는 주장한다. 우리의 경향성 그리고 그 경향성에 이바지하는 가언명법과 도덕법칙 사이에 갈등이 일어난다면, 도덕의 원리는 우리로 하여금 경향성을 무시하고 숙달이나 사려의 원리 보다는 법칙에 따라서만 행위하도록 요구한다. 그리고 법칙이 무엇에 관한 것이든 즉 법칙의 내용이 무엇이든, 법칙은 보편성의 형식을 지녀야 하고, 따라서 보편성이 법칙의 본질이 되기 때문에, 법칙에 따라 행위하는 것은 바로 형식적인 보편성의 원리에 일치해서 행위하는 것으로 환원된다. 우리는 이 점을 다음 절에서 고찰할 것이다.

#### IV. 선의지와 도덕적 의무

경향성은 유한한 이성적 존재자로서의 인간에게서 제거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도외시하고 오직 법칙에 따라서 행위하도록 요구하는 도덕의 원리는 단지 보편적 실천법칙을 행위의 준칙으로 삼도록 요구한다. 이 때 준칙은 실질적으로가 아니라 오직 형식적으로만 의지의 규정근거를 포함하는 원리로 생각된다.<sup>24)</sup> 앞에서 고찰한 것처럼, 실천원리의 실질은 의지의 대상이다. 만일 그 대상

22) Grundlegung, S.51.

23) K.d.p.V., S.36

24) K.d.p.V., S.31

이 의지의 규정근거라면, 의지의 규칙은 경험적인 제약들에 예속하게 되고 따라서 보편적인 실천법칙이 될 수 없다. “욕구능력의 객관(실질)을 의지의 규정근거로 전제하는 모든 실천원리는 예외없이 경험적이며, 결코 실천법칙을 제시할 수 없다.”<sup>25)</sup> 그리고 욕구능력의 실질을 의지 규정근거로 포함하는 “실천적인 훈계들은... 결코 보편적일 수 없다. 왜냐하면 욕구능력을 규정하는 근거가 동일한 대상을 지향하는 것으로 생각될 수 없는 쾌와 불쾌라는 감정에 기초하기 때문이다.”<sup>26)</sup>

따라서 우리는 법칙으로부터 모든 실질적인 것을, 즉 의지의 규정근거로서의 모든 대상을 제거해야 하며, 이 때 법칙에는 오직 “보편적인 법칙수립의 형식”<sup>27)</sup> 또는 “나의 모든 경향성을 포기하고서라도 법칙에 복종하라는 준칙”<sup>28)</sup> 또는 “행위 일반의 보편적인 합법칙성”<sup>29)</sup>만이 남게 된다. 간단히 말하면 모든 내용과 실질을 제거한 형식적 원리의 유일한 특성이 되는 보편성만이 남는다. 그리고 이런 보편적인 합법칙성이 의지의 원리가 될 때, 욕구되는 어떤 목적들과의 관련성도 배제하는 형식적 원리로서의 준칙에 따를 때, 즉 나의 준칙이 보편적인 법칙이 되는 것을 의욕할 수 있도록 행위할 때, 그런 준칙은 실천적인 도덕법칙이 된다. 바꿔 말해서 기대되거나 욕구되는 결과나 목적이 아니라 오직 준칙의 형식만이 의지를 규정할 때, 행위는 도덕적인 행위가 된다. 따라서 이성이 욕구능력을 완전히 지배할 수 있는 이성적 행위자에게 있어 그의 주관적인 실천원리 즉 준칙은, 그 실질에서가 아니라 형식에서, 주관적인 동시에 객관적이며 보편적인 실천법칙이 된다.

이런 의욕의 원리가 칸트에게는 도덕적 가치의 근원이다. 그에 의하면, “도덕적 가치는 행위에 의해서 획득되어야 할 의도에서가 아니라 행위를 규정하는 준칙에 의해서 나오며...그것이 실현시킬 대상의 현실성에서가 아니라 욕구능력의 모든 대상을 고려하지 않고도 행위를 생기도록 하는 의욕의 원리에 있다.”<sup>30)</sup> 또한 “이성적 존재자에서만 일어나는 법칙 자체에 대한 표상만이, 기대되는 결과가 아니라 오직 그것만이 의지 규정근거인 한에서, 우리가 도덕이라고 부르는 탁월한 선을 형성한다.”<sup>31)</sup> 칸트는 이런 의지, 즉 오직 도덕법칙만을 자신의 준칙으로 삼는 의지

25) K.d.p.V., S.23.

26) K.d.p.V., S.29~30

27) K.d.p.V., S.31

28) Grundlegung, S.27

29) Grundlegung, S.28

30) Grundlegung, S.26

31) Grundlegung, S.27

를 선의지라 부르면서, 그런 의지만이 이 세상 안에서나 이 세상 밖에서 유일하게 무제약적으로 선한 것이라고 주장한다.<sup>32)</sup>

칸트는 우리가 선이란 말을 사용할 때, 무의식적으로 혼동하고 있는 두 의미 즉 선과 복을 구별해야 하며, 마찬가지로 악이란 말에서도 악과 화 또는 불행이란 의미를 구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sup>33)</sup> 왜냐하면 우리가 행위의 선과 악을 고찰하느냐 아니면 복과 화를 고찰하느냐 하는 문제는 서로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에 의하면 복이나 화는 항상 쾌나 불쾌 또는 만족과 고통이란 감정상태에 대한 관계만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떤 대상을 욕구하거나 혐오한다면, 그것은 그 대상이 낳는 쾌 또는 불쾌의 감정에 관계해서만 생기는 것이다. 그러나 선과 악은 항상 이성의 법칙에 의해 어떤 것을 의지의 대상으로 삼도록 의지가 규정되는 한에서의 의지에 대한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 경우 법칙이 직접 의지를 규정하며, 법칙에 적합한 행위가 선한 행위가 된다. “의지의 준칙이 항상 법칙에 적합하는 의지는 단적으로 모든 점에 있어서 선하고, 또 모든 선의 최상제약이다.”<sup>34)</sup> 그러므로 선한 의지는 대상과 그 표상에 의해서 직접 규정되지 않고 이성의 법칙만을 행위의 동기로 삼는 능력이다.<sup>35)</sup>

그렇지 않다면, 욕구능력을 규정하는 근거 즉 대상이 의지의 준칙에 앞선다. 그 때 욕구능력의 규정근거는 쾌 또는 불쾌의 대상을 전제하고, 따라서 만족을 주거나 고통을 주는 것을 전제한다. 그리고 쾌를 촉진시키고 불쾌를 피하게 하는 이성의 준칙은 행위를 규정하기는 하지만, 그 행위는 경향성과 관련해서 상대적 의미에서 선이 될 뿐이다. 이 때에는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이성의 준칙은 결코 법칙이라고 할 수 없고, 이성적인 실천훈계라고 할 수 있을 뿐이다. 후자의 경우 우리가 구하는 만족은 선이 아니라 복이며, 이성의 개념이 아니라 감성의 대상에 대한 경험적 개념이다. 그러므로 칸트에게 있어서 선과 악은 원래 인격의 행위에 관계하는 것이지, 인격의 감정상태에 관계하는 것이 아니다. 즉 선 또는 악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오직 행위 태도, 의지의 준칙, 행위하는 인격 자체를 말하는 것이지, 선 또는 악이라고 불려지는 어떤 사물을 의미하지 않는다.

칸트에 의하면 선은 “이성의 원리에 따르는 욕구 능력의 필연적 대상”<sup>36)</sup>이다.

32) Grundlegung, S.18

33) K.d.p.V., S.71

34) K.d.p.V., S.73

35) K.d.p.V., S.71

36) K.d.p.V., S.68~69

즉 이성적 의지가 욕구능력을 완전히 지배하는 한, 선은 필연적으로 의욕되는 것이다. 단순히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욕구와 무관하게 행위를 결정하는 이성 즉 칸트가 순수한 실천이성이라 부르는 이성은, 그것이 욕구능력을 완전히 지배한다면, 도덕적 행위에서 나타나는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원리 즉 자신의 특정한 목적에 대한 특정한 욕구와는 무관하게 모든 이성적 행위자에게 타당한 원리나 법칙에 따라서 필연적으로 행위할 것이며, 필연적으로 선을 대상으로 할 것이라는 것이 칸트의 생각이다.

그런데 각종의 요구들과 동인에 의해서 자극을 받는 존재자에게는 그러한 순수 의지를 전제할 수 있지만, 도덕법에 반대되는 준칙들을 세울 수 없는 신성한 의지를 전제할 수는 없다. 신성한 의지는 선에 대한 사랑에서 자발적으로 그리고 필연적으로 행위할 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선의지는 선에 대한 사랑에서 의욕하는 능력이 아니라, 오히려 선에 대한 의무에서 의욕하는 능력이다. 왜냐하면 인간과 같은 존재의 의지는 완전히 선하지 않으며, 감각적 욕구나 경향성의 영향을 받는 데, 이런 것들이 인간에게 선의지가 나타나는 것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런 장애물이 없다면, 선의지가 필연적으로 드러낼 선한 행위들은 그런 장애물을 가진 인간에게는 의무로, 즉 그런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행해야만 하는 의무로 나타난다.

“도덕법에 대한 이런 [신성하지 못한] 의지의 관계는 책임이란 이름하에 있는 종속이다. 책임은 비록 이성과 이성의 객관적 법칙을 통해서이기는 하나, 행위하도록 하는 강제를 의미하고, 그 강제가 의무이다. 왜냐하면 정감적으로 촉발된 결의성은---그것에 의해서 규정되지 않고, 따라서 자유라고 해도---주관적 원인에서 발생하여 순수한 객관적 규정근거에도 가끔 대립하는 소망을 지니고 있으므로, 내면적이되 이지적인 구속이라고 불리울 수 있는 실천이성의 반항을 도덕적인 강제로서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sup>37)</sup>

절대적으로 선하지 않은 의지가 도덕의 원리에 종속되는 것 즉 도덕적 강제가 책임이고, 이 “책임으로 부터 행위해야 할 객관적 필연성이 의무”<sup>38)</sup>이다. 물론 선한 사람은 의무가 아니라 선 자체로 말미암아 행위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이란 조건에서는 너무 높은 도덕적 이상이다. 인간에게 그런 동기를 인정할 수 있다해도, 그것을 위해 의무의 동기를 간과한다면, 도덕적 광신주의를 산출할 수 있

37) K.d.p.V., S.38

38) Grundlegung, S.74

는 위험이 있을 뿐이다.

여기서 우리가 의무를 법칙에의 복종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 의무의 동기는 단순히 도덕법에의 일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적극적으로 의무에서 말미암아 행위하고자 하는 동기이다. 만일 어떤 사람이 의무인 것을 그것이 자신의 경향성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 의무를 준수한다면, 칸트의 견해로는 거기에 아무런 도덕적 가치도 없다는 것이다. “행위의 본질적인 도덕적 가치는 도덕법이 의지를 직접 규정하는 점에 존재한다. 도덕법에 합치하더라도, 어떤 종류의 것이든 감정을 매개로 의지를 규정하고, 따라서 도덕법을 위해서가 아니라 감정이 의지의 충분한 규정근거로 생각된다면, 그 행위는 적법성을 가지나 도덕성을 가지지는 않는다.”<sup>39)</sup> 이 말은 도덕적 선이라는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행위는 그 행위가 어떤 결과를 산출한다는 사실이나 어떤 결과의 산출을 추구한다는 사실로부터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것은 결국 그런 행위의 가치는 실질적 실천원리, 즉 어떤 결과를 산출하는 원리로부터 도출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선한 사람의 준칙은 <만일 내가 우연히 그것에 대한 경향성을 지닌다면, 나는 그런 종류의 것을 행할 것이다>가 아니라, <나의 의무가 무엇이든 나는 나의 의무를 행할 것이다>라는 것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의무로 말미암아 행위하는 자는 그 어떤 실질적인 실천원리에 의해 규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실질적 실천원리의 밑바탕에 놓여 있는 어떤 정감적 관심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대신 그는 “실천적 관심”<sup>40)</sup> 또는 “순수 도덕적 관심”<sup>41)</sup>을 가진다. 칸트에 의하면 경향성에 이바지하는 행위에서 관심은 행위의 대상에 대한 것이지만, 의무로부터 나온 행위에서 관심은 대상에 대한 것이 아니라 행위 그 자체와 그것의 이성적 원리(법칙)라고 한다.<sup>42)</sup> 그런 관심만이 순수한 도덕적 관심이다. 그것은 이성이 어떤 다른 욕구의 대상을 매개로 또는 주관의 어떤 특수한 쾌나 불쾌의 감정을 전제로 해서만 의지를 규정할 수 있을 때 생기는 정감적 관심과는 다르다. 도덕적 관심은 어떤 행위가, 그것의 결과나 목적에 관계없이, 도덕법칙에 일치한 것이기 때문에 그 행위를 수행하고자 하는 것이다. 인간은 도덕적 행위에 있어서 그런 직접적인 관심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 칸트의 신념 중의 하나이다.

여기서 도덕법칙이 관심을 불러일으키거나 감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것

39) K.d.p.V., S.84

40) Grundlegung, S.42, Anmerkung

41) K.d.p.V., S.175

42) Grundlegung, S.42.



이 우리에게 구속력을 지닌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오히려 도덕법칙이 우리에게 구속력을 지니고 타당하기 때문에,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감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sup>43)</sup> 이것은 오늘날 도덕적인 것이 더 높은 만족을 가져오기 때문에 도덕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간과하는 진리이다. 그 경우 우리가 도덕법칙이 구속력을 지닌다는 점과 도덕법칙에 따르는 생활에 최고선이 존재한다는 점을 의심하면, 더 높은 만족이란 것도 사라진다. 또한 자신이 얻으려는 바를 얻기 위해 도덕을 추구하라고 명령하는 것---신의 보상 또는 행복의 약속 때문에---도 항상 도덕을 부정하는 것이다. 특히 내세에서의 보상은 잠시 동안 위대한 일에 대한 노력과 시도를 명령하는 데 강한 호소력을 지닌다. 그러나 인간은 선택해야 한다고 달래거나 위협하는 것은 항상 선이 쾌락이나 만족의 감정보다 적은 가치를 지니며, 도덕법칙은 그 자체로 어떤 구속력도 지니지 못한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에 불과하다. 만일 감정과는 무관한 무제약적 선이나 의무가 없다면, 타산적인 도덕만이 남게 될 것이다.

## V. 타율과 자율

앞에서 고찰한 바에 의하면, 칸트에게 있어서 이성적 존재의 의지는 이성이 경향성에서 벗어나 필연적인 것으로서 즉 선으로서 제시하는 것만을 의무로서 선택하는 능력이 된다. 이런 의지에만 칸트는 도덕적인 절대적 가치를 인정한다. 여기서 칸트가 절대적 가치를 선의지제로 돌리는 이유중의 하나는 법칙 자체로 말미암아 법칙을 따를 경우 선택한 자는 자연적 경향성을 극복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는 더이상 자신의 본성적인 본능이나 욕구에 좌우되지 않는다. 선택한 사람은 욕구에 끌려 다니는 대신, 자신의 이성적 의지의 산물인 보편적 실천법칙에 따르며, 그런 한에서만 그는 자유롭다. 이것이 칸트가 자율이라는 개념을 사용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다.

칸트 이전에 자율에 대한 이론은 루소에게서 아볼 수 있다. 18세기 사람들이 법칙을 오직 자유에 대한 제한으로서만 생각했던 반면에, 루소만이 칸트에 의해 도입되는 법칙과 자유 사이의 본질적인 관계를 인식했던 사람이다. 물론 루소는 그 본질적인 관계를 오직 정치학에서만 드러내었지만, 자유 시민들에 의한 법을 통한

43) H. J. Paton, Op. Cit., p.258. Grundlegung, S.97~98

자치론은 칸트의 실천철학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sup>44)</sup> 루소와 더불어 칸트는 우리 자신이 규정한 법에의 복종이 참된 자유라고 믿었다. 칸트는 그런 법이 바로 도덕 법칙이라고 보았으며, 따라서 도덕법칙 하에 있는 의지, 의무로 말미암아 의욕하는 의지, 즉 선의지가 자유로운 의지로 생각했다. 이 때문에 그는 도덕법칙 하의 의지는 도덕법칙에 순종하면서도 자유로운 반면, 실용적인 법칙 하의 의지는 부자유하다고 보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도덕법칙 하의 의지가 자유이며, 실용적인 법칙에 의해 규정되는 의지는 부자유하다고 보아야 하는가? 실용적 법칙에 의해 규정되는 의지는 우연적인 정감적 관심의 대상에 의존하며, 따라서 행위의 객관적 필연성을 갖지 못한 단순한 혼계에 불과하다는 것은 우리의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답이 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앞에서 고찰한 것처럼, 실용적 법칙 하의 의지도 동물적인 의지에 비해서는 분명 자유로운 의지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도덕법칙 하의 의지에 비해 부자유하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런 문제에 대한 우리의 실마리는 자율이라는 새로운 자유 개념이다. 이 자율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자연법칙과 이성의 법칙을 구별해야 한다. 칸트는 인과적 행위를 지배하는 자연법칙은 스스로 부과한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에 의해 부과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결과를 일으키는 원인으로서의 인과적 행위는 그 자체가 다른 어떤 것에 의해서 야기되며 자발적이지 않다. 이것이 여기서 칸트가 타율이라 부르는 것으로서, 자연법칙이 그 전형적인 실예가 된다. 칸트에 의하면 “가장 일반적인 의미에서 자연은 법칙 하에 있는 사물의 현존이다. 이성적 존재자 일반의 감성적 자연은 경험적으로 제약된 법칙하에 있는 이성적 존재자의 현존이며, 따라서 이성에 대해 타율이다.”<sup>45)</sup> 그리고 “자연적 필연성은 작용원인에 대해 타율이다. 왜냐하면 그 결과는 어떤 다른 것이 작용원인을 원인성으로 규정하는 법칙에 따라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sup>46)</sup> 그러므로 자연법칙과 자유의 법칙은 작용원인이 다른 어떤 것에 의해 부과되는가 아니면 스스로 부과하는가에 따라 구별된다.

자유 의지의 자발적인 행위는 어떤 다른 것에 의해 부과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부과한 법칙에 따라서 일어나는 것이다. 이것이 칸트가 자율이라는 말로서 의미하

44) L.W. Beck, p.200

45) K.d.p.V., S.51

46) Grundlegung, S.81

는 것이다. 그에 의하면, “의지의 자율은 의지가 그 자신에 대해 (의욕 대상의 모든 성질로부터 독립해서) 법칙이 되는 의욕의 성질이다. 자율의 원리는 선택의 준칙이 동일한 의욕에서 동시에 보편법칙이 되는 것 이외의 다른 것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sup>47)</sup> 그리고 “의지가 모든 행위에 있어서 그 자신 하나의 법칙이라는 명제는 보편법칙으로서 자기 자신을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준칙 이외의 다른 것에 따라 행위하지 않는다는 원리를 표현하는 것이다.”<sup>48)</sup> 즉 자율의 원리에 따르는 의지는 자신 이외의 어떤 대상에도 의존하지 않으며, 그 자신이 대상이 되고, 따라서 그 자신에 대해 법칙이 되는 의지이며, 동시에 보편법칙으로 의욕될 수 있는 준칙에 의거해서 행위하는 의지이다. 우리는 이미 이런 자율의 원리가 정언명법의 정식이며 도덕적 행위의 원리라는 것을 앞에서 고찰했으므로, 도덕법칙 하의 의지가 바로 자율적 의지이고, 따라서 자유의지와 도덕법칙 하에 있는 의지는 하나이며 동일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sup>49)</sup>

그런데 우리의 의지는 숙달의 원리에서 생각될 수 있는 것처럼, 자연법칙을 의도적으로 사용한다는 의미에서, 즉 목적-수단의 형식으로 자연에서 인간의 목적을 추구함에 있어서 자연법칙에 순종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유롭게 자연법칙에 순종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런 순종은 이제 의지의 타율로 보여지고, 따라서 자유의 상실로 간주된다. 왜냐하면 타율이란 “의지가 보편적 입법에 대한 자신의 준칙의 적합성 이외의 다른 곳에서, 따라서 의지가 자신을 넘어서 그것의 객관의 어떤 성질 중에서 자신을 규정하는 법칙을 찾을 때”<sup>50)</sup> 생기는 것이며, 그럴 경우 의지는 자신에게 법칙을 부여하지 못하고, 오히려 욕구 대상이 의지와 의 관계를 통해 의지에게 법칙을 부여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관계가 단순한 경향성에 기인했는지 아니면 그런 경향성에 이바지하기 위해 이성의 표상에 기인했는지 간에, 오직 가언명법만이 가능하게 된다. 왜냐하면 가언명법은 내가 어떤 것을 하고 싶어하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해야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의지를 규정하는 규칙을 지시하기 위해서 의지의 객관이 근저에 두어지는 곳에서는, 어디서나 그 규칙은 타율 이외의 다른 것이 아니다. 그 명법은 ‘이런 객관을 의욕한다면, 또는 의욕하기 때문에, 이러 이러하게 행위해야 한다’는 제약

47) Grundlegung, S.74~75

48) Grundlegung, S.81

49) Grundlegung, S.82

50) Grundlegung, S.75

된 것이다. 따라서 그것은 결코 도덕적 즉 정언적으로 명령할 수 없다.”<sup>51)</sup>

그러므로 가언명법이 의거하는 모든 실질적인 원리들---사실 이 원리들은 명법이 아니라 단순한 실천적 훈계였다---은, 비록 자연법칙을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라 해도, 모두가 타율적인 도덕만을 가져온다.

칸트는 의지를 실질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타율적인 도덕을 가져오는 근거들에는 주관적 또는 경험적인 것과 객관적 또는 이성적인 것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 양자를 다시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으로 나누어서, 주관적 근거에는 외적인 것으로서 Montaigne의 교육설과 Mandeville의 사회제도설을, 내적인 것으로서 Epikuros의 자연적 감정설과 Hutcheson의 도덕적 감정설을 들고 있으며, 객관적인 근거에는 내적인 것으로서 스토아학파의 Zenon과 Wolff의 완전성에 근거한 도덕을, 외적인 것으로서는 신학적 도덕론을 들고 있다.<sup>52)</sup>

칸트가 주관적이며 경험적 원리라고 부르는 자연적인 감정 또는 도덕적인 감정에 기초한 원리들은 모두 자기 행복의 원리에 속한다. 자기 행복의 원리는 앞에서 고찰했던 것처럼 도덕법의 근거를 인간성의 특수한 성질이나 이 인간성이 두어진 우연적인 환경에서 빌려오기 때문에, 그것은 타율적 원리이며 아무런 객관적 필연성을 주지 않는다. 따라서 칸트는 자기 행복의 원리가 도덕에 무엇인가를 제공한다면, 그것은 오직 타산을 잘하는 것을 가르침으로써 덕으로 향하는 동인과 악덕의 동인을 동일시하고, 결과적으로 덕과 악덕의 구별을 없애버림으로써 도덕성을 전복시키고 도덕의 숭고함을 파괴한다고 주장한다.<sup>53)</sup>

이기주의적인 행복의 원리가 아니라, 타인의 행복에 대한 동정의 원리를 가져오는 도덕적 감정설에 대해 칸트는 전자보다는 조금은 더 도덕의 본질에 가깝다고 인정한다. 왜냐하면 그런 특수한 도덕감을 토대로 하는 도덕은 덕에 경의를 표하고 우리를 덕에 결합시키는 것이 우리의 어떤 이익이 아니라 덕의 아름다움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자신의 감정에 의해 다른 사람에게도 타당한 판단을 내릴 수 없으며, 또는 감정은 성질상 사람마다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선과 악의 일관적인 표준을 제시할 수 없다. 따라서 칸트는 이런 경험적 원리도 도덕법의 근거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보다 더 중요한 점은 이 경험적 원리에 따른 행위가, 비록 자신의 직접적인 이익에 대한 의도없이 일어난다해도, 궁극적으로는 쾌

51) Grundlegung, S.79

52) K.d.p.V., S.47~48

53) Grundlegung, S.77

나 불쾌의 감정을 통한 행복에의 기여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자기 행복의 원리와는 다른 경험적 원리가 아니라, 자기 행복의 원리 속에 포함시킬 수 있는 원리라는 점이다.<sup>54)</sup> 이 때문에 그런 감정에 의거한 도덕은 도덕법의 기초를 경험적인 감정에 두는 타율적인 도덕만을 산출할 뿐이다.

객관적이고 이성적인 의지 규정 근거로서의 완전성의 개념은 각 사물의 독특한 방식으로서의 (선형적인) 완성이거나 또는 사물 일반으로서의 사물의 (형이상학적) 완성이라는 의미의 이론적 의미가 아니라, 실천적 의미에서의 완전성이다. 즉 한 사물이 어떤 목적에 대해서 유용하거나 부족함이 없는 것을 의미한다. 칸트에 의하면 이런 완전성에는 인간의 바탕이 되는 내적 완전성으로서 숙달을 통해 촉진되거나 완성되는 재능과 또한 모든 목적 일반에 대해 부족함이 없는 외적 완전성으로서 최고의 완전한 실체 즉 신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인간 자신에 의한 내적 완전성이든 또는 신에 의한 외적 완전성이든, 완전성의 개념은 어떤 특정한 목적들과 관련해서만 의지의 규정근거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준칙의 실질로서 의지의 규정근거로 받아들여진 목적은 언제나 경험적이 된다. 따라서 칸트는 완전성의 개념은 도덕과 의무의 원리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삶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때문에 의욕의 객관으로 삼아지는 재능과 그 촉진은, 또는 선행하는 신의 의지와는 독립적인 실천원리 없이 신의 의지에 일치함을 의욕의 객관으로 삼을 때의 신의 의지는 우리가 그로부터 기대하는 행복에 의해서만 의욕의 동인이 될 수 있다.”<sup>55)</sup> 그러므로

“자신의 행복의 원리에서처럼 경향성에 의해서든, 완전성의 원리에서처럼 우리의 가능한 의욕의 대상 일반에로 향한 이성에 의해서든, 객관이 의지를 규정할 때, 의지는 결코 행위의 표상에 의해서가 아니라 예상되는 행위의 결과가 의지에 주는 동기를 통해서만 규정되는 것이다. 즉 나는 다른 어떤 것을 의욕하기 때문에 그 어떤 것을 해야한다. 이때 나의 주관 안에는 하나의 다른 법칙이 근거에 두어진다. 그것에 의해서만 나는 다른 어떤 것을 필연적으로 의욕하며, 그 법칙은 다시 이 준칙을 제약하는 명법을 요구한다. 우리의 힘으로 가능한 객관의 표상이 주관의 자연적 성질에 따라 주관의 의지에 작용하는 충동은 주관의 자연에 속한다. 이것이 감성(경향성이나 취향)이든 또는 그 본성의 특수한 조직에 따라 한 객관에서 만족하는 오성과 이성이든, 본래 자연은 그 자체로서 경험을 통해 인식되고 증명되어야 하는 그런 법칙을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법칙

54) Grundlegung, S.77, Anmerkung

55) K.d.p.V., S.49

은 그 자체 우연적이며, 그렇기 때문에 도덕적 규칙이 지녀야 할 단적인 실천규칙으로 되기에는 부적당하고, 언제나 의지의 타율일 뿐이다. 이 경우 의지는 자신에게 법칙을 주는 것이 아니라, 외적 충동이 그 충동을 받아들여도록 되어있는 주관의 자연을 통해 의지에게 법칙을 부과한다.”<sup>56)</sup>

이상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의지가 보편적 법칙수립에 있어서 자신의 준칙의 적합성 이외의 다른 곳에서, 즉 의지가 자신을 넘어서 그것의 대상의 어떤 성질 중에서 자신을 규정하는 법칙을 을 때, 언제나 타율적 법칙만이 있을 수 있으며, 그런 법칙은 도덕법칙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칸트는 오직 우리의 준칙에 의해 보편적인 법칙 수립의 형식만을 의지의 직접적인 규정근거로 하는 순수이성의 형식적인 실천원리만을 유일한 도덕적 원리로 인정하는 것이다. 이 형식적 실천원리만이 정언명법이 되기에, 즉 행위들을 의무하게 하는 실천법칙이 되기에 적합하며, 따라서 그것은 일반적으로 행위를 판정하거나 결의할 때의 인간의 의지에 적용하고자 하는 도덕성의 원리가 되기에 적합한 것이다.

이제 칸트가 필요로 하는 것은 감성적 존재로서의 인간에게 주어질 목적인 행복에의 집요한 요구로부터 자유롭기 위해, 이성의 법칙은 자연으로부터 또는 완전성의 개념으로부터 빌려 온 그런 법칙이어서는 안되며, 따라서 행위를 자연법칙이나 타율적인 법칙 하에 두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 법칙은 이성에 의해 주어져야 한다. 칸트는 이성에 의해 주어지는 그런 법칙을 자유의 객관적 법칙 즉 자율의 법칙(도덕법칙)으로 간주한다. 그러므로 의지가 독립성이란 소극적 측면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것처럼, 실천이성도 그 자체를 외적 법칙에 종속되는 대신에 법칙을 부여한다는 의미에서 자유이다. 그것은 의지에 대해 법칙을 부여하며, 의지에 대해 자유롭게 입법한다. 여기서 칸트는 입법의 능력으로서의 실천이성을 순수 의지와 동일시하므로, 이성의 입법은 의지가 그 자신에 대해 입법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의지는 자신이 세운 법칙에 자신이 복종하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칸트는 이를 자율 즉 적극적 의미에서의 자유로 생각하는 것이다.<sup>57)</sup> 그러므로 “의지의 자유와 의지의 자기 입법은 둘 다 자율이고 따라서 교환개념”<sup>58)</sup>이 되는 것이다.

56) Grundlegung, S.79

57) L.W. Beck, Op. Cit., p.197

58) Grundlegung, S.86

## Ⅵ. 결 론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칸트에 있어서 이성의 필연성과 의지 자유의 관계는 우리가 정감적 관심에 의해 삶의 방식을 세우지 않고, 이성의 법칙에 대한 도덕적 관심에 기초에서 삶을 영위할 때 그 어떤 모순적 관계도 아니라는 점이 드러난다. 정감적 관심은 우리에게 가언명령으로 구현되는 실용적인 법칙만을 부과한다. 그것은 아무런 보편성이 없는 실천적인 훈계로서만 가능하며, 우리를 타율의 지배아래 둔다. 반면에 이성의 법칙은 우리 스스로 수립한 자율적인 도덕법칙이다. 그 법칙은 유한한 이성적 존재자에게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강제하고 필연성을 부과하는 의지의 표현이다. 이 때문에 그런 존재자에게는 의지는 명령 하에 놓여 있으면서도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의미의 자유 즉 자율적 자유는 소극적 의미에서의 자유와 다르다. 여기서 는 행위 주체가 새로운 인과계열을 개시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행위 주체가 그런 개시에서 복종할 법칙의 근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문제된다. 이성적 존재자가 복종할 법칙은 타율적인 법칙일 수 없다. 그것은 언제나 의지를 외적인 대상의 성질에 종속시키기 때문에 자유에의 상실을 가져온다. 오직 의지 스스로 자신에게 부과하는 법칙만이 자유를 상실함이 없이 의지(결의성)의 방만한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법칙의 기원이 자연이나 경험 또는 신에 귀속되는 한, 그것이 아무리 엄격하고 확실하다해도, 그것에 대한 복종은 타율적이며 자유를 상실케 할 뿐이다. 그러므로 자율적 자유는 새로운 인과계열의 개시라는 의미에서 자발적 행위에 대한 자유는 아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발성으로서의 자유를 포함한다. 의지가 준칙에 따르거나 거부할 때, 거기에는 언제나 이성의 입법이 존재한다. 만일 의지가 그 내용이나 실질 때문에 법칙에 복종한다면, 그런 법칙 즉 이성의 원리 하에 있는 의지는 이성의 입법에 반대되지 않는 사려적인 의지가 되거나, 아니면 반대되는 원리를 택하는 악의지가 되지만, 어느 경우이든 그것은 실천적 의미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왜냐하면 의지는 가언명법에 대한 복종에서도 그리고 진실로 악한 행위에서도 자유롭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의지가 그 의욕의 실질과는 무관하게 필연적으로 규정된다면, 말하자면 법칙의 내용에 의해서가 아니라 형식 즉 보편적 입법에의 적합성에 의해 규정된다면, 그 때 이성은 자연의 자극에 반응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입법적이며 자유롭다. 따라서 자유로운 의지는 그것이 선일 때, 그것에 법칙을 부여하는 의지 그

자체인 순수 실천이성에 의해 규정된다. 물론 아무런 내적 장애없이 자신의 본성에 따라 그렇게 할 수 있는 의지는 신성한 의지이겠지만, 인간의 경우에는 감성적 충동에 저항하므로써만 그렇게 되는 의무로부터 행위하는 선의지이다. 이런 선의지로서의 의지는 그것의 자유에 아무런 손상도 입지 않으면서 그 법칙에 복종할 수 있다. 그것은 자발적이면서 동시에 자율적인 의지가 되므로써 자유를 획득하는 것이다. 오직 무법칙적이고 무원인적인 자유만이 여기서 상실된다.

따라서 칸트가 도덕적 행위만이 자유로우며, 다른 모든 행위들은 완전히 결정되어 있다고 말하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생명이 없는 무생물의 경우에 타율은 완전히 외부로부터 결정되는 인과적인 행위를 의미한다. 동물의 행동도 감각적 인상에 의해 단지 영향을 받거나 느낌을 받는 것이 아니라 결정된다. 반면에 인간의 모든 행위에서 의지는 능동적이며 자발적이다. 그러나 도덕적으로 선한 경우를 제외하고 인간의 의지는 법칙 자체를 위하여 행위하지 않는다. 그것은 자신을 넘어서서 어떤 감각적 대상이나 다른 것의 성질에서 자신을 결정하는 법칙을 논다. 칸트의 근본적인 생각은 인간의 의지나 선택이 결코 감각적인 동기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것은 단지 감각적 인상에 의해 느낌을 받거나 영향을 받을 뿐이다. 이 점이 바로 인간의 의지를 자유로운 선택의지로 부를 수 있는 주된 이유이다.



**Abstract**

The Law of the Reason and Freedom  
of the Will in Kant's Ethics

Jung-Hoon Hur

In Kant's ethics, will is the faculty of determining our causality through a conception of rules. Namely, will is the faculty of acting according to a conception of law, which is not a product or discovery of understanding but of reason. Kant's most important discovery is that the law is not a mere restriction on freedom but is itself a product of freedom. Precisely this conception marks the chief advance of the second *Critique* over the first *Critique*. L. W. Beck says that this is the Copernican Revolution in Kant's Moral philosophy.

But there is a problem in this context. If the law of practical reason determines the will, then how can we say that the latter is free? A will must be the independent of the mechanism of nature and all bindings. And the will must obey the law of reason. To say other words, reason demands absolute and necessary obedience. There seems to be a conflict of freedom of will and necessity of reason.

Of course, Kant says that a being that cannot act except under the Idea of freedom is really free in a practical respect and is obligated by the laws which follow from that Idea, regardless of whether we can prove theoretically that he is free or not. What freedom is warranted by this argument?